예금자보호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

2022. 8.

금 융 위 원 회

- 목 차 -

1.	예금보험위원회 운영	1
2.	예금보험공사 업무의 범위	2
3.	자료제출 요구 등	3
4.	예금보험기금의 설치	4
5.	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	5
6.	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	6
7.	채권양도의 특례	7
8.	자금지원의 결정 등	8
9.	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	9
10.	경영건전성제고계획	10
11.	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점검 등	11
12.	자금지원에 관한 특례	12

1. 예금보험위원회 운영 (안 제10조제4항)

가. 개정 이유

○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은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사항 중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사항

나. 개정 내용

○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의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특별 결의사항(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)으로 포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ㅇ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ㅇ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시 신중한 결정 도모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ㅇ 해당사항 없음

2. 예금보험공사 업무의 범위 (안 제18조제1항)

가. 개정 이유

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관련 업무를 예금보험공사에서 수행할 계획

나. 개정 내용

○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예금보험공사 업무의 범위에 포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ㅇ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ㅇ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3.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(안 제21조제1항)

가. 개정 이유

○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의 근거를 마련

나. 개정 내용

○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의 심사,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ㅇ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ㅇ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ㅇ 해당사항 없음

4.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(안 제24조)

가. 개정 이유

○ 예금보험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함

나. 개정 내용

- 예금보험기금의 설치와 관련한 공사의 업무수행 범위에 금융제 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포함
-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에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회수자금 및 수수료 등을 포함
- 예금보험기금의 용도에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을 포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ㅇ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ㅇ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5.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(안 제24조의5)

가. 개정 이유

O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관련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

나. 개정 내용

-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 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구분 계리
- 금융안정계정의 수입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,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. 회수자금 및 수수료 등으로 함
- 금융안정계정의 용도는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자금과 그 부대비용, 채권의 원리금 및 차입금 원리금의 상환 등으로 함
- 공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음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ㅇ 금융안정계정은 '수익자부담 원칙'에 따라 운용될 필요

라. 입법효과

ㅇ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기반 마련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ㅇ 해당사항 없음

6.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(안 제26조의2 제1항)

가. 개정 이유

○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관련 재원으로 예금보험기금채 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을 포함

나. 개정 내용

○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목적을 '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'에서 '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'라고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ㅇ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목적과 예금자보호법의 목적(제1조)및 관련 제도의 일관성 확보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7 . **채권양도의 특례**(안 제38조의3)

가. 개정 이유

○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채권양도의 특례 대상에 포함

나. 개정 내용

○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다른 자금지원 등과 동일하게 지명양도 채권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대상으로 동 자산을 포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ㅇ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ㅇ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ㅇ 해당사항 없음

8 . **자금지원의 결정 등**(안 제39조의4)

가. 개정 이유

○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등을 신설

나. 개정 내용

- 금융위원회는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* 관계기관(기획재정부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 등)의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
- *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상황,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금융 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
-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,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 안정계정의 재원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의 실행 여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

라. 입법효과

ㅇ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9 . **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**(안 제39조의5)

가. 개정 이유

○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의 운영을 위한 자금지원 요건 및 절차를 규정

나. 개정 내용

- ㅇ 부보금융회사등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
- ㅇ 공사는 신청회사가 자금지원의 요건*을 갖추었는지 심사
- *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닐 것, 유동성 또는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,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이 금융제도 안정에 적합할 것
- o 공사는 자금지원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고, 심사 결과 및 자금지원의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
- 공사는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방식·조건 등을 포함하여 부보금융회사 등과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ㅇ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간 협의 필요

라. 입법효과

ㅇ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ㅇ 해당사항 없음

10 . **경영건전성제고계획** (안 제39조의6)

가. 개정 이유

○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공사에 제출하도록 하여, 지원된 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, 금융회사가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

나. 개정 내용

- 부보금융회사등은 자금지원 신청시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을 제출해야 함
- *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,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ㅇ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ㅇ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11 . **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점검 등** (안 제39조의7)

가. 개정 이유

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원된 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, 금융회사가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

나. 개정 내용

- 부보금융회사등은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주기적(반기별)로 공사에 제출하고, 공사는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
- 공사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 피지원회사에 대하여 검사할 것을 요청
-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사후관리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원활히 협조할 필요

라. 입법효과

ㅇ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ㅇ 해당사항 없음

12.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(안 제39조의8)

가. 개정 이유

○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다른 법률(상법, 자본시장법)에 따른 주식 발행한도의 예외를 인정

나. 개정 내용

○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시 해당 부보금융회사 등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ㅇ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ㅇ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